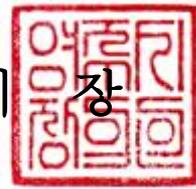


영주시 공고 제2024-253호

「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 
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7일

영 주 시



##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 
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추가

### 3. 제정조례안 : 붙임1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2

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도시재생과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※ 보내실 곳

- 우 편 :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  
영주시장(참조 : 도시재생과) 우편번호 36132
- 전 화 : 054-639-4802
- F A X : 054-639-4819
- E-mail : snani10044@korea.kr

<붙임 1>

영주시 조례 제 호

##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11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붙임 2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 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) ① ~ ④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9조 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제11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u>